

第258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2006年2月9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제2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 사임의 건
4.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
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6.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경과보고
7.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 인사청문경과보고
8.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인사청문경과보고
9.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경과보고
10. 경찰청장후보자(이택순) 인사청문경과보고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4.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
15. 統合防衛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1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2.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4. 풍수해보험법안
25. 에너지기본법안(대안)
2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30.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3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發明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辨理士法 일부개정법률안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40.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41.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
42.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43.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

附議된案件

| | |
|---|----|
| 1. 제2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 |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 제출) | 3 |
|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 사임의 건 | 4 |
| 4.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 | 4 |
| 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 4 |
| 6. 상임위원장(건설교통 이호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강래) 인사 | 5 |
| 7.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경과보고 | 6 |
| 8.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 인사청문경과보고 | 6 |
| 9.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인사청문경과보고 | 7 |
| 10.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경과보고 | 8 |
| 11. 경찰청장후보자(이택순) 인사청문경과보고 | 9 |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
|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
| 14.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
| 15.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김명자·강혜숙·구논희·권영길·김재경·김춘진·김태홍·김현미·노영민·노현송·노희찬·민병두·박영선·박재완·박찬석·박찬숙·배일도·백원우·서혜석·신국환·신중식·심상정·안상수·안영근·엄호성·오영식·오제세·우원식·우윤근·유승희·유시민·유정복·윤원호·윤호중·이계경·이상득·이영순·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혜봉·이호웅·장복심·장영달·정문헌·정의용·조승수·천영세·최성·최순영·최인기·한병도·현애자·홍미영·홍창선·황진하·손봉숙 의원 발의) | 12 |
| 16. 統合防衛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3 |
|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3 |
|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4 |
| 20.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태홍·강창일·문학진·안병엽·정장선·박명광·노웅래·심재덕·김교홍·양형일·우제항·김낙순·노현송·홍미영 의원 발의) | 16 |
|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 16 |
| 22.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

| | | |
|-----|---|----|
| 23.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
| 24. | 풍수해보험법안(정부 제출) | 19 |
| 25. | 에너지기본법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20 |
| 26.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20 |
| 27. |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
|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21 |
| 2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오영식 의원 발의)(오영식 의원 외 143인 발의) | 21 |
| 30. |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문학진·민병두·김태홍·이광재·김태년·배기선·서갑원·한병도·노영민·최철국·최규성·김교홍·장길부 의원 발의) | 21 |
| 31.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 의원 발의)(오영식 의원 외 144인 발의) | 23 |
| 32.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재완·김용갑·박순자·이운성·김기현·곽성문·엄호성·김태년·이혜훈·이성권·서병수·한병도·김정훈·나경원 의원 발의) | 23 |
| 3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
| 34. | 發明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24 |
| 35. | 辨理士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곽성문·김기현·박순자·박창달·이규택·김태년·최철국·오영식·이운성·김용갑·서갑원·엄호성·서상기·최인기 의원 발의) | 24 |
| 36.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
| 37. |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
| 38. |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26 |
| 39. |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6 |
| 40.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6 |
| 41. |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 27 |
| 42. |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9 |
| 43. |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 29 |
| o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9 |
| o | 5분자유발언 | 29 |

(14시24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2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3월 2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

(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 제출)

(14시2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경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산 해운대·기장을 안경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6년 2월 20일, 21일 이틀간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월 24일, 27일 이틀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 사임의 건

(14시3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5조제6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

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유기홍 의원, 김재운 의원, 장항숙 의원, 김애실 의원, 박승환 의원, 정진섭 의원, 단병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이번 투표는 1장의 투표용지에 건설교통위원장
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
명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 성
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
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
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36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투표종료)

○의장 김원기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
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
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6표 중 187표를 얻은 이호웅 의원
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6표 중 186표를 얻은 이강래 의원
이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
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상임위원장(건설교통 이호웅) ·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이강래) 인사

(15시14분)

○의장 김원기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호웅 의
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호웅 인천 출신 이호웅 의
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
을 불어넣어야 하는 상반된 과제가 우리 앞에 놓
여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계획 실시하고 있고, 기업혁
신도시 건설의 큰 과제가 놓여 있는 즈음에 이러
한 건설교통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동료·선
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
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에 늘 귀기울이던
서 이 중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래 이강래 의원입니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3개월짜리인 것 같습니다. 6월에
다시 꼭 한 표 부탁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심의는 우리 국회의 가
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의 실질적인 장
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약속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경과보고

(15시1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홍창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우식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난 2월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김우식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련하여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부동산 및 후보자 장남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을 지난 1980년대에 노후생활을 위하여 구입한 후 아직까지 매매한 바가 없고, 장남의 증여세 관련 의혹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피해자를 응급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황우석 연구팀 연구개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원인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후보자가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시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정부 출연기관 연구 제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이공계 처우개선 방안 등 과학기술 관련 양성 방안,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액 문제, 장남에 대한 증여 의혹 문제 및 과학자로서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시 황우석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한편으로 후보자는 지난 38년간 과학자로서의 전문성, 대학총장과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의 행정 경험,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소신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 인사청문경과보고

(15시2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청문회는 지난 1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

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 후보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답변, 증인·참고인에 대해 신문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결과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자질 및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보자는 북한 문제를 전공한 바 있고, NSC 사무차장 재직 시에 한미 간에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관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NSC 근무 경험은 앞으로의 통일부장관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후보자 자신도 대북정책 수행과 관련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및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둘째, 통일 및 대북한 인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그동안 북한 관련 논문, 저서 및 기고문에 대한 평가는 친북좌파적이었다는 의견과 오히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으로 후보자의 대북 성향에 대한 판단이 나뉘었으나 후보자 자신은 학자로서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적이었다며 현재도 이와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통일정책 업무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일정책 추진 역량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연구 경력과 NSC 사무차장 재직 경력으로 미루어 전문성과 업무 추진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견해와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해 통일정책 추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후보자에 대하여 같은 논문을 여러 월간지에 게재하여 학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그 외에 도덕성 측면에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기타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으로서 청문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식견 및 향후 추진 방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바,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 문제는 평화와 분리되어 생각될 문제가 아니고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의 NSC 상임위원장직 겸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정책과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인사 청문경과보고

(15시2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오영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요지는 주요 산업정책에 대한 입장, 후보자의 경력 및 정치 활동에 관한 사항,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자원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8여 년 동안 기업에서 종합무역상사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근무를 했고,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당의 정책위에서 정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이 맡겨지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전적 및 사후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FTA 체결은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종의 규제를 정비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확보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자원의외교를 많이 강화하여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난해 12월 9일 사학법의 처리 및 그로 인한 53일간의 국회 파행과 관련하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을 기재하였습니다.

여섯째, 최근 6년간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지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직의 사임 건의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민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다른 직책은 모두 사퇴할 것임을 확정한 상태라는 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곱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의 공제 신청은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도 2004년도 및 2005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연말공제 시 요건에 맞지 않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았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답변하였음을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기업에서 다년간 재직하였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경제 관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당에서도 정조위원장,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은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소득공제 신청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후보자가 당의장과 원내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사학법 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에 후보자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경과보고

(15시3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9항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배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를 드리게 된 걸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노동부장관 이상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 전반의 노동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외에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비정규직 보호 입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관련 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사유제한 및 기간제한 문제에 관하여는 사유제한의 방식은 노동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므로 우리 현실에 맞게 기간제한의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 긴급조정권 발동 문제, 배타적 교섭구조 등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복수노조의 허용 문제는 창구 일원화가 문제의 핵심이고, 긴급발동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고용선진화, 청년실업,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 및 고용안정 위주의 노동정책에 역점을 두고, 청년실업에 대하여는 눈높이 차이를 줄이는 데 우선 노력함과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노사정 관계 복원, 양극화 해소, 산업재해 예방 등 기타 노동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노사정 대화 재개에 적극 노력하고,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재해의 최소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거 후보자의 성향이 지나친 친노동자 성향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청문회 중 답변을 통하여 노사 균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인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면되고 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일반 국민의 정서 및 법 감정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므로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용서와 관용 속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처의 명의로 취득한 태백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신중하지 못한 답변태도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지적과 1995년 우성법무법인 취직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신고 시 월평균 급여를 적게 신고한 사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내부인사규정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박영진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위원장은 신입장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용서비스 선진화 과정에서 소외된 직업상담원의 고용안정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받은 자를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 및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차후 장관직의 수행 시 도덕적 직무수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한 현 정부의 국정이념과도 크게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후보자로서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3선을 역임한 국회의원으로서는 환경노동위에서 다년간 입법활동 경력과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감안하여 볼 때 후보자는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노동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소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경찰청장후보자(이택순) 인사청문경과보고

(15시3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0항 경찰청장후보자(이택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최규식 의원입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이택순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15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여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을 함께 청취함으로써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보자 소유 2채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미신고에 따른 고의적인 납세 회피 의혹 부분, 세 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위장전입 의혹 부분, 부당한 연말 부양가족 소득공제 의혹 부분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둘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견해 및 청장으로서의 향후 활동계획, 수사권 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검·경 관계에 대한 입장,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수사권 조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그동안의 추진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집회·시위 과정에서 부상한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 문제, 과잉 진압 방지 대책,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전·의경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후보자는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집회·시위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 사돈 배병렬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교통사고 인지 시점의 정확성 여부, 단순 물적피해 사고임에도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 사건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 여부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현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감찰실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치경찰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 대책, 자치경찰제에 대한 저조한 홍보 실태 개선 대책, 향후 경찰인사 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연고지 출신자를 해당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준비요원으로 훈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후보자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찰의 현안 과제인 경위 이하 근속승진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속승진제 관련 경찰공무원법의 재개정에 대한 입장,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근속승진제에 대한 확고한 관철 의지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소신을 물었고, 후보자는 근속승진제 관련 의원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 경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경찰청장 임기제 확립 방안,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 여성 경찰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 상습 성폭력 범죄자 검거 대책, 경찰대학 폐지 및 간부육성체계 개선 방안, 경찰인사의 지역 간 균형 유지 방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의지를 물었고, 소신을 갖고 연구검토하여 각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청문 내용을 종합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위장전입 의혹,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 부당한 소득공제 의혹 등에 대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후보자의 사과가 있었고,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법 집행을 엄정히 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으며, 대통령 사돈 배병렬의 음주운전 의심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후 그 결과를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필요 시 우리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 의지가 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노력을 지속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근속

승진제와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도덕성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산적인 경찰의 현안과제 해결과 경찰개혁 등을 추진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찰청장 후보자 이택순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전병헌 정무위원회의 전병헌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안으로 제안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 체계를 조정하고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국가보훈기본법에 맞추어 설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타가로 입적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현행 규정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를 신설하여 면제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관과 교육보호실시기관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법 적용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행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법 적용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행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신청 시로 소급하며, 시행령에 규정된 형벌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枯葉劑後遺癡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표발의)(김명자·강혜숙·구노희·권영길·김재경·김춘진·김태홍·김현미·노영민·노현송·노희찬·민병두·박영선·박재완·박찬석·박찬숙·배일도·백원우·서혜석·신국환·신중식·심상정·안상수·안영근·엄호성·오영식·오제세·우원식·우윤근·유승희·유시민·유정복·윤원호·윤호중·이계경·이상득·이영순·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해봉·이호웅·장복심·장영달·정문헌·정의용·조승수·천영세·최성·최순영·최인기·한병도·현애자·홍미영·홍창선·황진하·손봉숙 의원 발의)

15. 統合防衛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4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명자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개정안이 입법 실현될 경우 군의 양성 평등과 여군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고 있는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등의 효과와 군 인력 및 장교의 경력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 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한 해안 또는 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 해상검문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 및 함대사령관에게도 부여한다는 입법취지에 바탕해서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인

14.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김명자 의원 대

정해서,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지역의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적정한 취약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의 선정뿐만 아니라 해제에 있어서도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취약지역 상황을 분석해서 시·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했습니다.

둘째, 지역군사령관이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한 해안과 강안에 민간인 등의 출입을 제한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지역과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령관의 자의적인 출입 제한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 심사보고서
統合防衛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통

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시0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유기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실무적 사항 등을 함께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서병수 의원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 등록시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정당의 시·도 당은 선거기간 중에 5인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전주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시의 선거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마다 각각 4인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중 괄호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이 착오로 잘못 반영된 것인바, 이를 정정하여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시08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재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그리고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공여되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이 날로 슬럼화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가 공동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 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하였고,

둘째,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환 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공동화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 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반환 공여구역을 매각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처리기

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제외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기간 계산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 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하도록 하고,

넷째, 새로 도입되는 이의신청제도의 불복기간을 국민의 권익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90일로 하며,

다섯째, 민원사무 처리사항의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덕규 이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7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박기춘·김태홍·강창일·문학진·안병엽·정장선·박명광·노웅래·심재덕·김교홍·양형일·우제항·김낙순·노현송·홍미영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22.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7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0항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북제주군갑 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온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둘째, 온천 개발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병행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완료하도록 하며,

셋째,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 발견 신고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등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출신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과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정비방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던 접경지역정책심의 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책심의위원회 소속과 구성원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개척이 용이해져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변경과 위원 구성의 변경이 형식적인 개정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측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0인, 반대 7인, 기권 3인
으로서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최순영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주도와 정부의 법안 추진 과정상의 문
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제주도 도청이 제주특별자치
도추진계획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2005
년도 5월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사업으
로 관광·교육·의료를 선정하는 내용의 기본계
획안을 서둘러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도민들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제주도 도청과 정부는 공청회
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입

법예고 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까지 축소
해 추진된 공청회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
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공청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업무 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제주도 도민의 합의를 통해 제출되
어야 할 법안이 제주도 도민들 간의 갈등의 골을
심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법 조항만 363개나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작년 11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한 가운데 상임
위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의하면 외국 법인의 의
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
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의료광고 및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해
서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미
명하에 의료시장 전면 개방화, 의료의 양극화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히 침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산업의 문제입니다.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경제자유구역 이
상으로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도 도 조례로
제정해 일명 자율학교와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
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무분별한 교육 개방과 교육의 영리화
와 교육의 양극화는 물론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전략사업으로 관광과 농업 분야가 포함
되어 있고, 건설·환경·사회복지·치안·교통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
니다.

결국 정책에 대한 타당성도,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도,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검증도, 전국화
에 대한 파급력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어느 것 하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이러한 법안을 문제시하지 않고 통과를 시킨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심각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논의를 통해서 제주도 도민이 하나가 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힘차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최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주도 서귀포 남제주군 출신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도를 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주도를 홍콩·싱가포르에 견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획기적이고 총체적인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분권과 자치의 모범적 준거이며,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을 제주도에서 모범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2003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이후 3년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정부, 연구기관, 제주도민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00만 명의 제주도민들은 이제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길을,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희생도 감수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권의 훼손이라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전국 최초로 기초 시·군을 없애고 단일 광역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 이 법안을 만들어 내기까지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제주도민의 총체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주도는 이제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되어 왔던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그 내용들을 법률안에 반영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제주도에서는 국내외 영리법인의 교육·의료 기관 설립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하여 국내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등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교육·의료 분야의 개방 수준을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직 의견을 달리하는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2단계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과 합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이제 가난과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로 일궈 낸 제주도민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계로 향하고자 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해방 이후 60여 년 가까이 내려온 기존의 틀을 혁신하여 분권과 자치의 모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제주도 발전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찬성표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꿈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행복으로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도전에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희망으로, 행복으로 대한민국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재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9인, 기권 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6인, 기권 4인으로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풍수해보험법안(정부 제출)

(16시37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풍수해보험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인기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풍수해보험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있던 이사장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아 원안의 결하였으나 향후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당연 취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 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 재정 운영의 부담 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험 전문가와 농민 관련 단체의 대표 등으로부터 법안에 관한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 지원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복구비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을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현행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

였고 그 외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
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수해보험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풍수해보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6인, 기권 4인
으로서 풍수해보험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에너지기본법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7.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3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기본법
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최철국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에너지기본법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 조승수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3건의 에너지기본
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개별법에 근거한 정부의 각종 에너지
지정책 및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였고,

둘째, 에너지 관련 계획 중 핵심이 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셋째,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수립·추
진 체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다섯째, 정부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정부
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는 이혜훈 의원, 정갑윤 의원, 박상
돈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4건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공장 등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의 입주계약 체결을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에너지기본법안(대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덕규 최철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64인, 반대 6인으로서 에너지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오영식 의원 발의)(오영식 의원 외 143인 발의)

30.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

표발의)(오영식·문학진·민병두·김태홍·이광재·김태년·배기선·서갑원·한병도·노영민·최철국·최규성·김교홍·강길부 의원 발의)

(16시50분)

○부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8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광성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광성문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광성문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심재엽 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08년부터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 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

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적극적인 보증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과 시·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조성하고자 성과공유제의 확산, 기술·인력·자금 등의 부문에서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률안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구체화하고, 그 수립 주기를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시행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3년으로 조정하며,

둘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 정보화·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셋째, 정부투자기관만이 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구조조정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의 상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광성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역시 174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오영식 의원 발의)(오영식 의원 외 144인 발의)

3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재완·김용갑·박순자·이윤성·김기현·곽성문·엄호성·김태년·이혜훈·이성권·서병수·한병도·김정훈·나경원 의원 발의)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8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1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2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서갑원 산업자원위원회 전남 순천 출신 서갑원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수정 의결하였는 바,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대상 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둘째,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던 것을 동 센터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본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근속자의 국민주택 우선분양 자격을 완화하여 이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국민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수정 의결하였는 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주택만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미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도 공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법안에서 그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현재까지 그 지정 실적이 없는 벤처기업 전용단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수정 의결하였는 바,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도 수행할 예정임에 따라 벤처 확인 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 확인 기관의 벤

처기업 확인 업무 이외에 확인의 취소 업무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보고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덕규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3인 중 찬성 역시 163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發明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35. 辨理士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곽성문·김기현·박순자·박창달·이규택·김태년·최철국·오영식·이윤성·김용갑·서갑원·엄호성·서상기·최인기 의원 발의)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06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4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이병석 한나라당 포항 출신의 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입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교홍 의원과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해서 교부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둘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비해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

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현재 민법상 화해계약에 그치고 있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수준으로 강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이 확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식재산 분야에서 민간 부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변리사회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변리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변리사로서 등록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의 종류에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관리 업무가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변리사회 지회 또는 지부 설립 승인 등 변리사 업무의 소관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특허청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 도모 및 특허심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 중 “조약에 위반된 경우”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기 이전에 적용되는 사유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 시에 도입되었던 실용신안 심사 전 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특허제도와 절차적 통일을 위하여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를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실용신안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실용신안법의 변경출원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의 형식이 특허법과 상이하여 특허법 일부개정안과 통일하는 등 일부 조항을 체계·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辨理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0인, 기권 3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7인 중 역시 찬성 167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40.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7시15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성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슬로베니아 및 오만 등 2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인력 수출을 포함한 투자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해 인력과 자본의 이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사회보장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 계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국민이 타방 계약 당사국에서 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경우 그 일방 계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비준동의안은 2005년 12월 7일 제 256회 국회 제1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7시22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41항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정문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제256회 국회 제1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현재 재일 조선인을 포함한 한국인들은 일본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바, 지방참정권 확보 문제는 재일 한국인 등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올바른 전후 처리를 위한 최우선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일한국인 등을 위한 지방참정권 보장을 일본국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의회에 대해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재일 한국인 등의 지방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일본국 안에서 재일 한국인 등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처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국 정부에 대해 재일 한국인 등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재일 한국인 등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을 옹호하며 이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지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정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반대 토론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분이 있으실 텐데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헌 의원께서 지방참정권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생각을 만장일치로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10년 이상, 일본 재일동포 사회에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게 재일동포 사회에 이로우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93년도에 1년간 유학할 때도 여러 잡지를 봤고 오늘도 제가 반대 토론하기 위해서 회의장 바깥에서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 교수님한테도 여쭙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지방참정권 문제는 국정이 아니라 지방참정권이고 선거권만 주는 것이지 피선거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 사회가 나뉘어진다는, 반대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총선하고 민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 이걸 인정하게 되면 자민당 지지파, 민주당 지지파, 공명당 지지파, 사민당 지지파, 공산당 지지파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일동포들이 당선시켜 주어도 그 당선된 사람은 일본 사람이어서 재일동포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적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못 미친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일본 오사카의 이쿠노라는 구인데 거기에 재일동포의 한 4분의 1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런 데가 제

일 많은 것입니다. 보통 100~200명 이런 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다음에 일본 사회라는 데가, 재일동포로서 귀화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차별대우로 자살한 아라이 쇼케이 자민당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민당 준비 안에는 조총련계는 빠져 있습니다. 조선적을 가진 사람은 안 주게 나눠 놓고 있고, 지금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당은 창가학회가 있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1만명 정도가 매년 귀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참정권을 주게 되면 재일동포들이 계속 귀화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화로 인해서 재일동포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실익도 없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일본 사회에 있는 민족차별정책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 민단체든 조총련계든, 거기는 일본학교에 지원하는 돈보다 훨씬 적은 3분의 1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징병·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원폭 피해자들 이런 일본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보호를 해 주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민족차별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본의 참정권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과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우리나라 국회가 이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일본 재일동포 사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덕규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59인 중 찬성 123인, 반대 10인, 기권 26인으로서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시30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42항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형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생의 날」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과 지병문 의원 소개 청원에 대해 병합심사한 결과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탄압과 학정에 항거했던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학생의 날」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11월 3일의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동 기념일 행사를 교육부총리가 주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양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58인 중 찬성 147인, 반대 8인, 기권 3인으로서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17시33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43항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17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34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네 분입니다. 잠깐 의석에 앉으셔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 수원 권선 출신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간사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내정자에 대한 검증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미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소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요구하였던 증인이 위원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부결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격이 없다'는 감정적인 의견을 언론에 그대로 표출하는 등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 검증보다는 정치공방의 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표결 결과가 한나라당의 목표와 다르다고 해서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것인지 오히려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된 증인의 인터뷰를 방영하여 참고인 증언과 같은 효과를 내려는 시도까지 한 한나라당이 오히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곡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는 전문성을 평가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부터 이미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청문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시민 내정자의 13개월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발미삼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 정도 내용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마치 고

의적으로 탈루한 중대한 범법자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이 아닌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업무수행 자질과 보건복지 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제 국무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 '치명적인 흠결', '범법행위' 등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과 사실관계가 아닌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경과보고서에 넣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유시민 장관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조차 없는 청문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 7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사청문회 운영으로 매우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극화 해소 및 식품안전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부처입니다. 또다시 장관 임명 저지라는 역사적 사명을 띤 것처럼 정치싸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국회가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대상으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이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재완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의 국무위원 내정에 대해 축하는 고사하고 이처럼 반대의견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름지기 ‘선공후사(先公後私)’와 ‘비례부동(非禮不動)’이야말로 국회의원이 되새겨야 될 참된 덕목이라고 믿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비록 오늘 청문경과는 보고드리지 못하지만 그 경위나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여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채택이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무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면담하여 편집한 영상물이라도 청문질의의 거증자료로 삼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국회법에도 없는 웅색한 논리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발상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고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진기록도 수립됐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한편 이러이러한 사유로 적격이라고 판단된다는 견해와 다른 한편 저러저러한 까닭으로 부적격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고 기술하면 되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 위원님들은 한나라당 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조차 왈가왈부하면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미의 평가 부분은 아예 삭제하고 그냥 질의·응답의 요지만 보고서에 수록하자는 무책임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서는 속기록의 요약본에 불과하며 알맹이가 빠진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무릇 청문경과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속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의 평가를 집약함으로써 청문위원과 인사권자가 훗날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

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고의든 과실이든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12건의 범법 및 위법행위들을 확인했고, 그 밖에 계층·집단 간 갈등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후보자의 평소 언행 등 흠결들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격사유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도덕성과 인성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서의 필요조건과 보건복지정책의 비전과 현안 대응 역량 등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충분조건을 모두 꼼꼼히 검증코자 했지만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수많은 하자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충분조건은 검증할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검증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3년 동안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영사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소득과약을 비롯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초미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은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4년 국민연금 미납 파문으로 관방장관 등 6명의 정치인이 물러났고 미국에서도 1989년 20여년 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청문 결과에 아랑곳없이 후보자를 곧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물론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참뜻이기도 합니다.

왜 다수의 여당 의원님들조차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였으며, 왜 의회 사상 초유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지 그 배경을 대통령께서는 잘 헤아리셔서 상식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론을 조사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 느낀 제도개선 사

항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위원을 검직하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국회의장의 경우처럼 금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에 영상 면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차제에 공직후보자는 세금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도 제출하도록 공직선거법 역시 손볼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박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의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그리고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입니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TC의 한미 간 FTA에 따른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농산품뿐 아니라 공산품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섬유·의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감소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전반에 메가톤급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FTA 사전 정지작업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천명하였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우리 시장 침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길까지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스필버그가 '살인의 추억'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관객 1000만을 돌파한 '왕의 남자'를 비롯하여 '친절한 금자씨', '실미도' 등은 그 자체로서 우리 민족의, 겨레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 영화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이지만 스크린 쿼터 축소가 강행되는 내일에는 할리우드의 상업영화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가 50% 이상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주장입니다. 세계 영화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영화의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오직 정부의 보고서에만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쟁력이 있다는 한국 휴대폰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약 1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화는 미국 시장의 90%, 전 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의 한국 영화와 85%의 미국 영화 사이에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멕시코와 대만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수용한 결과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멕시코는 현재 자국 영화 시장점유율이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35%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이 5%대로 추락하였습니다.

비단 영화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집요한 스크린 쿼터 축소 요구는 방송쿼터 축소 요구로 옮겨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류의 핵심으로 부각한 한국 드라마의 활력은 80% 이상을 국내 제작으로 편성해야 하는 방송쿼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곧 '대장금', '가을동화'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사멸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화는 장래 가장 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영화산업에 뒷서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영화는 경제 논리로만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최근 문화다양성협약이 148개국에 참여한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는 통상에서의 문화적 예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대표적 제도가 스크린 쿼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거대한 영화산업에 자국의 영화 시장을 통째로 내준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스크린 쿼터

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문화의 꽃이고 문화는 그 국력 자체입니다. 덩치가 다른 것들의 경쟁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천영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 출신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입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영화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의 처와 자녀들과 함께 ‘왕의 남자’ 그리고 ‘태풍’을 봤습니다. 아직 저는 블록버스터로 유명한 ‘킹콩’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 영화를 사랑해서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영화가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1500억의 영화진흥금고 지원이 있었고, 남양주 종합촬영소 700억 규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미 관객 점유율이 59.1%, 일수 점유율이 54.9%로 170일입니다. 현재 146일의 상영일수를 73일로 줄이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일수 점유율은 170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영화는 단순한 스크린 쿼터로 지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가 그동안 유용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 왔습니다. 98년도에 BIT 한미 간 투자협상 과정에서 스크린 쿼터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스크린 쿼터를 지켜 왔습니다. 85년부터 146일 일수를 무려 20년이 넘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 성장했습니다. 스크린 쿼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73일로 50%를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146일 중에 재량으로 감경된 40일을 제외한 106일로 본다면 33일 정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 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약 7000억 달러의 GDP 규모로 봤을 때 수입 수출 규모가 5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대외 경제에 70%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입니다. 석유가 나오니까? 부존자원이 충분합니까? 대외 무역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세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생존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세계의 가장 막대한 시장인 미국을 도외시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정면 도전하고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미 간 FTA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저희들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를 할 거냐 말 거냐 추상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의 농업 분야나 다른 제반 취약산업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해묵은 낡은 좌파적 시각에서 한미 FTA를 찬성이나 반대냐의 이데올로기로 접근해서는 저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참여정부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미 40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스크린 쿼터 73일을 지켜 갈 것입니다. 실제로 73일에 의해서 보장되는 한국 영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우리 영화 관계 산업, 감독 주연 조연 영화배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문화적·잠재적 힘에 의해서, 이 상영일수는 국민들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장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우리의 경쟁력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세계로 같이 뻗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98년도 BIT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다시 되물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스크린 쿼터 재조정 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크린 쿼터 협상의 일부 조정이 결국,

결과적으로 스크린 쿼터 폐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참여정부와 저희 열린우리당은 다 양성협약에 기초해서 최소한의 우리 문화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 제도 자체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영화인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일 자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10:00 | | |
| 2.23(목) 10:00 |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 |
| 2.24(금) 10:00 | 1. 경제에 관한 질문 ※휴회결의 | ○2. 25(1일간) |
| 2.25(토) | 휴회(1일간) | ○위원회 활동 |
| 2.26(일) | 공 휴 일 | |
| 2.27(월) 10:00 | 1. 경제에 관한 질문 (계속) | |
| 2.28(화) 10:00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
| 3. 1(수) | 삼 일 절 | |
| 3. 2(목) 14:00 | 1. 안건처리 | |

제258회국회(임시회) 의사일정

2006. 2. 1 ~ 3. 2

| 일 자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2. 1(수) 14:00 | 개 회 식 | |
| 개회식 직후 | 1.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휴회결의 | ○2. 2~2. 7(6일간) |
| 2.2(목)~ 2.7(화) | 휴회(6일간) | ○위원회 활동 |
| 2. 8(수) 10:00 | 1. 인도공화국 대통령 연설 | |
| 2. 9(목) 14:00 | 1. 제2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 3. 안건처리 ※휴회결의 | ○2. 1~3. 2(30일간) *건설교통·예결특위 위원장 보궐선거 등 *인사청문경과 보고 ○2. 10~2. 18 (9일간) |
| 2.10(금)~ 2.18(토) | 휴회 (9일간) | ○위원회 활동 |
| 2.19(일) | 공 휴 일 | |
| 2.20(월) 10:00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
| 2.21(화) 10:00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
| 2.22(수) | 1. 정치에 관한 질문 | |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투표 결과

| 위 원 회 | 투 표 결 과 | | | | | |
|-------------|---------|-----|-----|---|-----|---|
| 건설교통 | 이호웅 | 187 | 김병호 | 4 | 임인배 | 3 |
| | 안택수 | 2 | 김태환 | 1 | 김한길 | 1 |
| | 김혁규 | 1 | 박상돈 | 1 | 이강래 | 1 |
| | 이낙연 | 1 | 허 천 | 1 | 기 권 | 4 |
| | 무 효 | 9 | | | | |
| 예산결산 특 별 | 이강래 | 186 | 김정부 | 3 | 고홍길 | 3 |
| | 김성조 | 2 | 강길부 | 1 | 김영춘 | 1 |
| | 김효석 | 1 | 최병국 | 1 | 기 권 | 4 |
| | 무 효 | 14 | | | |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 | | | |
|-----|-----|-----|-----|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 강성종 | 강재섭 | 강창일 | 고조홍 |
| 고진화 | 고홍길 | 공성진 | 곽성문 |
| 구논회 | 권경석 | 권영길 | 권오을 |
| 김기춘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 김명자 | 김명주 | 김무성 | 김병호 |
| 김석준 | 김선미 | 김성곤 | 김애실 |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주 | 김용갑 |
| 김우남 | 김원기 | 김원웅 | 김재윤 |
| 김재홍 | 김정권 | 김정부 | 김춘진 |
| 김태년 | 김태환 | 김학송 | 김현미 |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현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허 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정갑윤

기권 의원(2인)

김태홍 이군현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영선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현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최순영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허태열 홍창선 황우여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혜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홍문표

기권 의원(2인)

이경제 정갑윤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노회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재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진구 이혜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한광원 한명숙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최철국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노회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 | | | | | | | |
|-----|-----|-----|-----|-----|-----|-----|-----|
| 서갑원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김명자 |
| 서해석 | 선병렬 | 손봉숙 | 송영길 | 김명주 | 김무성 | 김병호 | 김석준 |
| 신계륜 | 신중식 | 신학용 | 심재엽 | 김선미 | 김성곤 | 김애실 | 김양수 |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안민석 | 김영덕 | 김영주 | 김용갑 | 김우남 |
| 안병엽 | 안택수 | 안홍준 | 양승조 | 김원기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오영식 | 김정권 | 김정부 | 김춘진 | 김태년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김태홍 | 김태환 | 김학송 | 김형오 |
| 우제항 | 원혜영 | 원희룡 | 유기준 | 김형주 | 김효석 | 김희정 | 나경원 |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민 | 유시민 | 노영민 |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 유인태 | 유재건 | 유정복 | 윤건영 | 류근찬 | 문학진 | 문희 | 문희상 |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 민병두 | 박근혜 | 박기춘 | 박명광 |
| 이강래 | 이경숙 | 이정재 | 이계안 | 박상돈 | 박세환 | 박승환 | 박영선 |
| 이계진 | 이광철 | 이군현 | 이근식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석 | 배기선 |
| 이기우 | 이낙연 | 이명규 | 이병석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병수 |
| 이상민 | 이성구 | 이성권 | 이승희 | 서상기 | 서재관 | 서해석 | 선병렬 |
| 이시종 | 이영순 | 이영호 | 이용희 | 손봉숙 | 송영길 | 신계륜 | 신학용 |
| 이원영 | 이윤성 | 이인기 | 이인영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 이재오 | 이재창 | 이정일 | 이종구 | 안민석 | 안병엽 | 안택수 | 안홍준 |
| 이진구 | 이해봉 | 이혜훈 | 이호웅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 이화영 | 임인배 | 임종인 | 장경수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 장복심 | 장영달 | 장윤석 | 장향숙 | 우윤근 | 우제항 | 원혜영 | 원희룡 |
| 전병헌 | 정갑윤 | 정덕구 | 정두언 | 유기준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민 |
| 정문헌 | 정병국 | 정성호 | 정세균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정복 |
| 정의용 | 정의화 | 정장선 | 정종길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
| 정진석 | 정진섭 | 정청래 | 제종길 | 이강래 | 이경숙 | 이정재 | 이계안 |
| 조성래 | 조정식 | 주승용 | 주호영 | 이계진 | 이광철 | 이군현 | 이근식 |
| 지병문 | 진수희 | 진영 | 채수찬 | 이기우 | 이낙연 | 이명규 | 이미경 |
| 천영세 | 최경환 | 최구식 | 최규식 | 이병석 | 이상민 | 이성구 | 이성권 |
| 최병국 | 최성 | 최순영 | 최용규 | 이승희 | 이시종 | 이영순 | 이영호 |
| 최철국 | 한광원 | 한선교 | 허천 | 이인영 | 이원영 | 이윤성 | 이인기 |
| 허태열 | 홍문표 | 홍창선 | 황우여 | 이종구 | 이진구 | 이재창 | 이정일 |

반대 의원(1인)

김정부

기권 의원(2인)

문희 최재천

(홍재형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195인, 기권 의원 2인임)

○統合防衛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 | | | |
|-----|-----|-----|-----|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 강성종 | 강재섭 | 강창일 | 고조홍 |
| 고진화 | 고홍길 | 공성진 | 곽성문 |
| 구논회 | 권경석 | 권영길 | 권오을 |

| | | | |
|-----|-----|-----|-----|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김명자 |
| 김명주 | 김무성 | 김병호 | 김석준 |
| 김선미 | 김성곤 | 김애실 | 김양수 |
| 김영덕 | 김영주 | 김용갑 | 김우남 |
| 김원기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 김정권 | 김정부 | 김춘진 | 김태년 |
| 김태홍 | 김태환 | 김학송 | 김형오 |
| 김형주 | 김효석 | 김희정 | 나경원 |
| 노영민 |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 류근찬 | 문학진 | 문희 | 문희상 |
| 민병두 | 박근혜 | 박기춘 | 박명광 |
| 박상돈 | 박세환 | 박승환 | 박영선 |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석 | 배기선 |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병수 |
| 서상기 | 서재관 | 서해석 | 선병렬 |
| 손봉숙 | 송영길 | 신계륜 | 신학용 |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 안민석 | 안병엽 | 안택수 | 안홍준 |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 우윤근 | 우제항 | 원혜영 | 원희룡 |
| 유기준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민 |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정복 |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
| 이강래 | 이경숙 | 이정재 | 이계안 |
| 이계진 | 이광철 | 이군현 | 이근식 |
| 이기우 | 이낙연 | 이명규 | 이미경 |
| 이병석 | 이상민 | 이성구 | 이성권 |
| 이승희 | 이시종 | 이영순 | 이영호 |
| 이인영 | 이원영 | 이윤성 | 이인기 |
| 이종구 | 이진구 | 이재창 | 이정일 |
| 이호웅 | 이화영 | 임인배 | 이혜훈 |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임종인 |
| 장향숙 | 전병헌 | 정갑윤 | 장윤석 |
| 정두언 | 정문헌 | 정병국 | 정덕구 |
| 정세균 | 정의용 | 정병국 | 정성호 |
| 정종복 | 정진석 | 정의화 | 정장선 |
| 제종길 | 조정식 | 정진섭 | 정청래 |
| 주호영 | 조성래 | 조정식 | 주승용 |
| 채수찬 | 지병문 | 진수희 | 진영 |
| 최규식 | 천영세 | 최경환 | 최구식 |
| 최용규 | 최병국 | 최성 | 최순영 |
| 한명숙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 홍문표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 | 홍창선 | 황우여 | |

기권 의원(1인)

윤건영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 | | | |
|-----|-----|-----|-----|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 강성종 | 강재섭 | 강창일 | 고조홍 |
| 고홍길 | 공성진 | 곽성문 | 구논회 |
| 권경석 | 권영길 | 권오을 | 김낙성 |
| 김낙순 | 김덕규 | 김명자 | 김명주 |
| 김무성 | 김병호 | 김석준 | 김선미 |
| 김성곤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 김영주 | 김용갑 | 김우남 | 김원웅 |
| 김재윤 | 김재홍 | 김정권 | 김정부 |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김태환 |
| 김학송 | 김형오 | 김형주 | 김효석 |
| 김희정 | 나경원 | 노영민 | 노웅래 |
| 노현송 | 노희찬 | 단병호 | 류근찬 |
| 문학진 | 문희 | 문희상 | 민병두 |
| 박기춘 | 박상돈 | 박성범 | 박세환 |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석 |
| 배기선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서혜석 |
| 선병렬 | 손봉숙 | 송영길 | 신계륜 |
| 신학용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 안명옥 | 안민석 | 안택수 | 안홍준 |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오영식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제항 |
| 원희룡 | 유기준 | 유기홍 | 유승민 |
| 유시민 | 유인태 | 유정복 | 윤건영 |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
| 이강래 | 이경숙 | 이경제 | 이계안 |
| 이계진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 이낙연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 이상민 | 이성구 | 이성권 | 이승희 |
| 이시종 | 이영순 | 이영호 | 이용희 |
| 이원영 | 이윤성 | 이인기 | 이인영 |
| 이재오 | 이재창 | 이정일 | 이종구 |
| 이진구 | 이해봉 | 이혜훈 | 이호웅 |
| 이화영 | 임인배 | 임종인 | 장경수 |
| 장복심 | 장영달 | 전병헌 | 정갑윤 |
| 정덕구 | 정두언 | 정문헌 | 정병국 |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의화 |
| 정장선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 | | | |
|-----|-----|-----|-----|
| 정청래 | 제종길 | 조성래 | 조정식 |
| 주성영 | 주승용 | 주호영 | 지병문 |
| 진수희 | 진영 | 채수찬 | 천영세 |
| 최경환 | 최구식 | 최규식 | 최병국 |
| 최성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 홍창선 | 황우여 | | |

(이규택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182인, 기권 의원 없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 | | | |
|-----|-----|-----|-----|
| 강기갑 | 강기정 | 강봉균 | 강성종 |
| 강재섭 | 강창일 | 고조홍 | 고홍길 |
| 공성진 | 곽성문 | 구논회 | 권경석 |
| 권영길 | 권오을 | 김낙성 | 김낙순 |
| 김덕규 | 김명자 | 김명주 | 김무성 |
| 김병호 | 김석준 | 김선미 | 김성곤 |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주 |
| 김용갑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 김재홍 | 김정권 | 김정부 | 김춘진 |
| 김태년 | 김태홍 | 김태환 | 김학송 |
| 김형오 | 김형주 | 김효석 | 김희정 |
| 나경원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 노희찬 | 단병호 | 류근찬 | 문학진 |
| 문희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 박상돈 | 박성범 | 박승환 | 박영선 |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석 | 배기선 |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병수 |
| 서상기 | 서재관 | 서혜석 | 선병렬 |
| 손봉숙 | 송영길 | 신계륜 | 심재엽 |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안민석 |
| 안택수 | 안홍준 | 양승조 | 양형일 |
| 엄호성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항 | 원혜영 |
| 원희룡 | 유기준 | 유기홍 | 유선호 |
| 유승민 | 유시민 | 유인태 | 유정복 |
| 윤건영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 이강두 | 이강래 | 이경숙 | 이경제 |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이근현 |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이명규 |
| 이미경 | 이방호 | 이병석 | 이성구 |
| 이성권 | 이승희 | 이시종 | 이영순 |
|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 이윤성 |

| | | | | | | | |
|-------|-------|-------|-------|-------|-------|-------|-------|
| 이 인 기 | 이 인 영 | 이 재 오 | 이 재 창 | 윤 두 환 | 윤 원 호 | 윤 호 중 | 이 강 두 |
| 이 정 일 | 이 종 구 | 이 진 구 | 이 해 봉 | 이 강 래 | 이 경 숙 | 이 경 재 | 이 계 안 |
| 이 혜 훈 | 이 호 응 | 이 화 영 | 임 인 배 | 이 계 진 | 이 광 철 | 이 군 현 | 이 근 식 |
| 임 중 인 | 장 경 수 | 장 복 심 | 장 영 달 | 이 기 우 | 이 낙 연 | 이 명 규 | 이 미 경 |
| 장 윤 석 | 전 병 헌 | 정 갑 윤 | 정 두 언 | 이 방 호 | 이 병 석 | 이 상 배 | 이 성 구 |
| 정 문 헌 | 정 병 국 | 정 성 호 | 정 세 균 | 이 성 권 | 이 승 희 | 이 시 중 | 이 영 호 |
| 정 의 용 | 정 의 화 | 정 장 선 | 정 중 복 | 이 용 회 | 이 원 영 | 이 윤 성 | 이 인 기 |
| 정 진 석 | 정 진 섭 | 정 청 래 | 제 종 길 | 이 인 영 | 이 재 오 | 이 재 창 | 이 정 일 |
| 조 성 래 | 조 정 식 | 주 성 영 | 주 승 용 | 이 중 구 | 이 진 구 | 이 한 구 | 이 해 봉 |
| 주 호 영 | 지 병 문 | 진 수 희 | 진 영 | 이 혜 훈 | 이 호 응 | 이 화 영 | 임 인 배 |
| 채 수 찬 | 천 영 세 | 최 경 환 | 최 구 식 | 임 중 인 | 장 경 수 | 장 복 심 | 장 영 달 |
| 최 규 식 | 최 병 국 | 최 성 | 최 용 규 | 장 윤 석 | 장 향 숙 | 전 병 헌 | 정 갑 윤 |
| 최 재 천 | 최 철 국 | 한 광 원 | 한 선 교 | 정 덕 구 | 정 두 언 | 정 문 헌 | 정 병 국 |
| 허 천 | 허 태 열 | 홍 문 표 | 홍 창 선 | 정 성 호 | 정 세 균 | 정 의 용 | 정 의 화 |
| 황 우 여 | | | | 정 장 선 | 정 중 복 | 정 진 석 | 정 진 섭 |
| | | | | 정 청 래 | 제 종 길 | 조 성 래 | 조 일 현 |
| | | | | 조 정 식 | 주 성 영 | 주 승 용 | 주 호 영 |
| | | | | 지 병 문 | 진 수 희 | 진 영 | 채 수 찬 |
| | | | | 최 경 환 | 최 구 식 | 최 규 식 | 최 병 국 |
| | | | | 최 성 | 최 용 규 | 최 재 천 | 최 철 국 |
| | | | | 한 광 원 | 한 선 교 | 허 천 | 허 태 열 |
| | | | | 홍 문 표 | 홍 창 선 | 황 우 여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7인)

| | | | |
|-------|-------|-------|-------|
| 강 기 정 | 강 봉 균 | 강 성 종 | 강 재 섭 |
| 강 창 일 | 고 조 흥 | 고 흥 길 | 공 성 진 |
| 곽 성 문 | 구 논 회 | 권 경 석 | 권 오 을 |
| 김 낙 성 | 김 낙 순 | 김 덕 규 | 김 명 자 |
| 김 명 주 | 김 무 성 | 김 병 호 | 김 석 준 |
| 김 선 미 | 김 성 곤 | 김 애 실 | 김 양 수 |
| 김 영 덕 | 김 영 주 | 김 용 갑 | 김 우 남 |
| 김 원 응 | 김 재 윤 | 김 정 권 | 김 춘 진 |
| 김 태 년 | 김 태 흥 | 김 태 환 | 김 학 송 |
| 김 형 오 | 김 형 주 | 김 효 석 | 김 희 정 |
| 나 경 원 | 노 영 민 | 노 응 래 | 노 현 송 |
| 류 근 찬 | 문 학 진 | 문 회 | 문 희 상 |
| 민 병 두 | 박 기 춘 | 박 명 광 | 박 상 돈 |
| 박 성 범 | 박 세 환 | 박 승 환 | 박 영 선 |
| 박 재 완 | 박 종 근 | 박 찬 석 | 박 회 태 |
| 배 기 선 | 백 원 우 | 변 재 일 | 서 갑 원 |
| 서 병 수 | 서 상 기 | 서 재 관 | 서 해 석 |
| 선 병 렬 | 손 봉 숙 | 송 영 길 | 신 계 룬 |
| 신 학 용 | 심 재 엽 | 심 재 철 | 안 경 룬 |
| 안 명 옥 | 안 민 석 | 안 택 수 | 안 흥 준 |
| 양 승 조 | 양 형 일 | 염 호 성 | 염 동 연 |
| 오 영 식 | 오 제 세 | 우 상 호 | 우 원 식 |
| 우 윤 근 | 우 제 향 | 원 혜 영 | 원 희 룬 |
| 유 기 준 | 유 기 흥 | 유 선 호 | 유 승 민 |
| 유 시 민 | 유 인 태 | 유 정 복 | 윤 건 영 |

반대 의원(7인)

| | | | |
|-------|-------|-------|-------|
| 강 기 갑 | 권 영 길 | 노 회 찬 | 단 병 호 |
| 이 영 순 | 천 영 세 | 최 순 영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 | | | |
|-------|-------|-------|-------|
| 강 기 갑 | 강 기 정 | 강 봉 균 | 강 성 종 |
| 강 재 섭 | 강 창 일 | 고 조 흥 | 고 흥 길 |
| 공 성 진 | 곽 성 문 | 구 논 회 | 권 경 석 |
| 권 영 길 | 권 오 을 | 김 낙 성 | 김 낙 순 |
| 김 덕 규 | 김 명 자 | 김 명 주 | 김 무 성 |
| 김 병 호 | 김 석 준 | 김 선 미 | 김 성 곤 |
| 김 애 실 | 김 양 수 | 김 영 덕 | 김 영 주 |
| 김 용 갑 | 김 우 남 | 김 원 응 | 김 재 윤 |
| 김 정 권 | 김 춘 진 | 김 태 년 | 김 태 흥 |
| 김 태 환 | 김 학 송 | 김 형 오 | 김 형 주 |
| 김 효 석 | 김 희 정 | 나 경 원 | 노 영 민 |
| 노 응 래 | 노 현 송 | 노 회 찬 | 단 병 호 |
| 류 근 찬 | 문 학 진 | 문 회 | 문 희 상 |
| 민 병 두 | 박 기 춘 | 박 명 광 | 박 상 돈 |
| 박 성 범 | 박 세 환 | 박 승 환 | 박 영 선 |
| 박 재 완 | 박 종 근 | 박 찬 석 | 박 회 태 |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김학송 김태오 김효석 김희정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학용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형일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영호 이인기 이인영 이인태
 이윤성 이윤성 이인기 이정일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이재오 이재창 이한구 이해봉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진섭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병국 정의화 정진섭 조일현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진섭 조일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섭 조일현 주호영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조일현 주호영 채수찬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호영 채수찬 최규식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채수찬 최규식 최용규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규식 최용규 최용규 한선교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용규 최용규 한선교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용규 최재천 허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홍창선 황우여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우윤근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태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섭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조일현
 조성래 조일현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7인)

양승조 염동연 우윤근 이미경
 장복심 장향숙 주승용

기권 의원(3인)

김형주 유시민 이해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1인)

| | | | |
|-------|-------|-------|-------|
| 강 봉 균 | 강 재 섭 | 강 창 일 | 고 조 흥 |
| 고 흥 길 | 공 성 진 | 곽 성 문 | 권 경 석 |
| 권 오 을 | 김 낙 성 | 김 낙 순 | 김 덕 규 |
| 김 명 자 | 김 명 주 | 김 무 성 | 김 병 호 |
| 김 석 준 | 김 선 미 | 김 성 곤 | 김 애 실 |
| 김 양 수 | 김 영 덕 | 김 영 주 | 김 용 갑 |
| 김 우 남 | 김 원 웅 | 김 재 윤 | 김 춘 진 |
| 김 태 년 | 김 태 흥 | 김 태 환 | 김 학 송 |
| 김 형 오 | 김 형 주 | 김 효 석 | 김 희 정 |
| 나 경 원 | 노 영 민 | 노 웅 래 | 노 현 송 |
| 류 근 찬 | 문 학 진 | 문 희 | 문 희 상 |
| 민 병 두 | 박 기 춘 | 박 명 광 | 박 상 돈 |
| 박 성 범 | 박 세 환 | 박 승 환 | 박 영 선 |
| 박 재 완 | 박 종 근 | 박 찬 석 | 박 희 태 |
| 배 기 선 | 백 원 우 | 변 재 일 | 서 갑 원 |
| 서 병 수 | 서 상 기 | 서 재 관 | 서 혜 석 |
| 선 병 렬 | 손 봉 숙 | 송 영 길 | 신 계 룬 |
| 신 학 용 | 심 재 엽 | 심 재 철 | 안 경 룬 |
| 안 민 석 | 안 택 수 | 안 흥 준 | 양 승 조 |
| 양 형 일 | 엄 호 성 | 엄 동 연 | 오 영 식 |
| 오 제 세 | 우 상 호 | 우 원 식 | 우 윤 근 |
| 우 제 항 | 원 혜 영 | 원 희 룬 | 유 기 준 |
| 유 기 흥 | 유 선 호 | 유 승 민 | 유 시 민 |
| 유 인 태 | 윤 건 영 | 윤 두 환 | 윤 원 호 |
| 윤 호 중 | 이 강 두 | 이 강 래 | 이 경 숙 |
| 이 경 재 | 이 계 안 | 이 계 진 | 이 광 철 |
| 이 근 식 | 이 기 우 | 이 낙 연 | 이 명 규 |
| 이 미 경 | 이 방 호 | 이 병 석 | 이 상 득 |
| 이 상 배 | 이 성 구 | 이 성 권 | 이 영 호 |
| 이 용 회 | 이 원 영 | 이 윤 성 | 이 인 기 |
| 이 재 오 | 이 재 창 | 이 정 일 | 이 중 구 |
| 이 한 구 | 이 해 봉 | 이 호 웅 | 이 화 영 |
| 임 인 배 | 임 종 인 | 장 경 수 | 장 복 심 |
| 장 영 달 | 장 윤 석 | 장 향 숙 | 전 병 현 |
| 정 갑 윤 | 정 덕 구 | 정 두 언 | 정 문 현 |
| 정 성 호 | 정 세 균 | 정 의 용 | 정 의 화 |
| 정 장 선 | 정 종 복 | 정 진 석 | 정 진 섭 |
| 정 청 래 | 조 성 래 | 조 일 현 | 조 정 식 |
| 주 승 용 | 지 병 문 | 진 수 회 | 진 영 |
| 채 수 찬 | 최 경 환 | 최 구 식 | 최 규 식 |
| 최 병 국 | 최 성 | 최 용 규 | 최 재 천 |
| 최 철 국 | 한 광 원 | 한 선 교 | 허 천 |
| 허 태 열 | 홍 문 표 | 홍 창 선 | |

반대 의원(9인)

| | | | |
|-------|-------|-------|-------|
| 강 기 갑 | 구 논 회 | 권 영 길 | 노 회 찬 |
| 단 병 호 | 심 상 정 | 이 인 영 | 천 영 세 |
| 최 순 영 | | | |

기권 의원(5인)

| | | | |
|-------|-------|-------|-------|
| 강 기 정 | 김 정 권 | 유 정 복 | 이 승 희 |
| 황 우 여 | | | |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62인)

| | | | |
|-------|-------|-------|-------|
| 강 기 갑 | 강 기 정 | 강 봉 균 | 강 재 섭 |
| 강 창 일 | 고 흥 길 | 공 성 진 | 곽 성 문 |
| 구 논 회 | 권 경 석 | 권 영 길 | 권 오 을 |
| 김 낙 성 | 김 낙 순 | 김 덕 규 | 김 명 자 |
| 김 명 주 | 김 병 호 | 김 석 준 | 김 선 미 |
| 김 성 곤 | 김 애 실 | 김 양 수 | 김 영 덕 |
| 김 영 주 | 김 우 남 | 김 원 웅 | 김 재 윤 |
| 김 정 권 | 김 춘 진 | 김 태 년 | 김 태 흥 |
| 김 학 송 | 김 형 주 | 김 효 석 | 김 희 정 |
| 나 경 원 | 노 영 민 | 노 웅 래 | 노 현 송 |
| 노 회 찬 | 단 병 호 | 류 근 찬 | 문 학 진 |
| 문 희 상 | 민 병 두 | 박 기 춘 | 박 명 광 |
| 박 성 범 | 박 승 환 | 박 영 선 | 박 재 완 |
| 박 찬 석 | 박 희 태 | 배 기 선 | 백 원 우 |
| 변 재 일 | 서 갑 원 | 서 상 기 | 서 재 관 |
| 서 혜 석 | 선 병 렬 | 손 봉 숙 | 송 영 길 |
| 신 계 룬 | 심 상 정 | 심 재 엽 | 안 경 룬 |
| 안 민 석 | 안 택 수 | 안 흥 준 | 양 승 조 |
| 양 형 일 | 엄 호 성 | 엄 동 연 | 오 영 식 |
| 오 제 세 | 우 상 호 | 우 원 식 | 우 윤 근 |
| 원 혜 영 | 원 희 룬 | 유 기 준 | 유 기 흥 |
| 유 선 호 | 유 승 민 | 유 시 민 | 유 인 태 |
| 윤 건 영 | 윤 두 환 | 윤 원 호 | 윤 호 중 |
| 이 강 두 | 이 강 래 | 이 경 숙 | 이 계 안 |
| 이 계 진 | 이 광 철 | 이 근 식 | 이 기 우 |
| 이 낙 연 | 이 명 규 | 이 미 경 | 이 방 호 |
| 이 병 석 | 이 상 득 | 이 성 구 | 이 승 희 |
| 이 영 호 | 이 용 회 | 이 원 영 | 이 윤 성 |
| 이 인 기 | 이 인 영 | 이 재 오 | 이 정 일 |
| 이 중 구 | 이 한 구 | 이 해 봉 | 이 호 웅 |
| 이 화 영 | 임 인 배 | 임 종 인 | 장 경 수 |
| 장 복 심 | 장 영 달 | 장 윤 석 | 장 향 숙 |
| 전 병 현 | 정 덕 구 | 정 두 언 | 정 성 호 |
| 정 세 균 | 정 의 용 | 정 의 화 | 정 장 선 |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6인)

고조홍 김무성 김용갑 김태환
 문희 박상돈 박세환 박종근
 유정복 이경재 이성권 이재창
 정갑윤 정문헌 최경환 허천

기권 의원(4인)

김형오 서병수 심재철 이상배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김영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풍수해보험법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7인)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승환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찬석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안민석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구 이 한 구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조 성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문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6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단 병 호

심 상 정 천 영 세

기권 의원(4인)

김 애 실 심 재 철 이 상 배 이 해 봉

○에너지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4인)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오 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계 료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조 성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6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단 병 호

심 상 정 천 영 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영 길
 권 오 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찬 석
 박 승 환 박 영 선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희태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강래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호응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종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응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정일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성화 정창섭 주승용 이호응 이화영
 정세균 정의용 정진섭 정청래 주승용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주승용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진섭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최규식 최철국 최창선 정창래 조성래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철향 홍창선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최병국 최성 최재천 최철향 한광원 한선교 허천 최경환 최구식
 황우여 한광원 한선교 허천 최철향 한광원 한선교 허천

기권 의원(4인)

문희박 박세환 이한구 최경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계안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인기
 이영호 이원영 이재창 이호응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호응
 이종구 이한구 이해봉 임종인
 이호응 이화영 임인배 장향숙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정문헌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성화
 정장선 정청래 주승용 이호응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진섭
 정창래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최규식
 채수찬 천영세 최병국 최철향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재천
 최철향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창선 황우여 한광원 한선교 허천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 | | | | | | | |
|------------------|-----|-----|-----|-----|-----|-----|-----|
| 김학송 | 김한길 | 김형오 | 김형주 | 곽성문 | 권경석 | 권영길 | 권오을 |
| 김효석 | 김희정 | 나경원 | 노영민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김명자 |
| 노현송 | 노희찬 | 단병호 | 류근찬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곤 | 김애실 |
| 문병호 | 문학진 | 문희 | 문희상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주 | 김용갑 |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상돈 | 김재윤 | 김정권 | 김정훈 | 김춘진 |
| 박성범 | 박세환 | 박승환 | 박영선 | 김태년 | 김태홍 | 김태환 | 김학송 |
| 박종근 | 박찬석 | 박희태 | 배기선 | 김한길 | 김형오 | 김형주 | 김효석 |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병수 | 김희정 | 나경원 | 노영민 | 노현송 |
| 서상기 | 서재관 | 서혜석 | 선병렬 | 노희찬 | 단병호 | 류근찬 | 문병호 |
| 손봉숙 | 신계륜 | 신학용 | 심상정 | 문학진 | 문희 | 문희상 | 민병두 |
| 심재엽 | 안경률 | 안민석 | 안홍준 | 박기춘 | 박명광 | 박상돈 | 박성범 |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박세환 | 박승환 | 박영선 | 박종근 |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박찬석 | 박희태 | 배기선 | 백원우 |
| 우윤근 | 우제항 | 원희룡 | 유기준 | 변재일 | 서갑원 | 서병수 | 서상기 |
| 유선호 | 유승민 | 유시민 | 유인태 | 서재관 | 서혜석 | 선병렬 | 손봉숙 |
| 유정복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신계륜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엽 |
| 이강두 | 이강래 | 이경숙 | 이경재 | 심재철 | 안경률 | 안민석 | 안홍준 |
| 이계경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 이근현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오영식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 이명규 | 이미경 | 이방호 | 이병석 | 우제항 | 원희룡 | 유기준 | 유선호 |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승희 | 유승민 | 유시민 | 유인태 | 유정복 |
| 이시종 | 이영호 | 이원영 | 이윤성 | 윤건영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 이인기 | 이인영 | 이재창 | 이정일 | 이강두 | 이경숙 | 이경재 | 이계경 |
| 이해봉 | 이호웅 | 이화영 | 임인배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이근현 |
|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이명규 |
| 장향숙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현 | 이미경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의화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승희 |
| 정장선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이시종 | 이영호 | 이원영 | 이윤성 |
| 정청래 | 조성래 | 조일현 | 조정식 | 이인기 | 이인영 | 이재오 | 이재창 |
| 주승용 | 지병문 | 진영 | 천영세 | 이정일 | 이종구 | 이한구 | 이해봉 |
| 최경환 | 최구식 | 최규식 | 최병국 | 이혜훈 | 이호웅 | 이화영 | 임인배 |
| 최성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현애자 | 장향숙 | 전병헌 | 정갑윤 | 정두언 |
| 홍문표 | 홍창선 | 황우여 | | 정문현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 반대 의원(5인) | | | | 정의화 | 정장선 | 정종복 | 정진석 |
| 김영덕 | 윤건영 | 이상득 | 이재오 | 정진섭 | 정청래 | 조성래 | 조정식 |
| 이종구 | | | | 주승용 | 주호영 | 지병문 | 진영 |
| 기권 의원(6인) | | | | 채수찬 | 천영세 | 최경환 | 최구식 |
| 박재완 | 심재철 | 이한구 | 이혜훈 | 최규식 | 최병국 | 최성 | 최재천 |
| 주호영 | 채수찬 | | | 최철국 | 한광원 | 한선교 | 허천 |
| | | | | 허태열 | 현애자 | 홍문표 | 홍창선 |
| | | | | 황우여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강봉균 강재섭 고조홍 고흥길

기권 의원(1인)

이강래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 | | | |
|-----|-----|-----|-----|
| 강기갑 | 강봉균 | 강재섭 | 고조홍 |
| 고홍길 | 곽성문 | 권경석 | 권영길 |
| 권오을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 김명자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곤 |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주 |
| 김용갑 | 김원웅 | 김재윤 | 김정권 |
| 김정훈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 김태환 | 김학송 | 김한길 | 김형오 |
| 김형주 | 김효석 | 김희정 | 나경원 |
| 노영민 |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 류근찬 | 문병호 | 문학진 | 문희 |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 박상돈 | 박성범 | 박세환 | 박승환 |
| 박영선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석 |
| 박희태 | 배기선 | 백원우 | 변재일 |
| 서갑원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 서혜석 | 선병렬 | 손봉숙 | 신계륜 |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엽 | 심재철 |
| 안경률 | 안민석 | 안홍준 | 양승조 |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오영식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 우제항 | 원희룡 | 유기준 | 유선호 |
| 유승민 | 유시민 | 유인태 | 유정복 |
| 윤건영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 이강두 | 이강래 | 이경숙 | 이경재 |
| 이계경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 이균현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 이명규 | 이미경 | 이방호 | 이병석 |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 이승희 | 이시종 | 이영호 | 이원영 |
| 이윤성 | 이인기 | 이인영 | 이재오 |
| 이재창 | 이정일 | 이종구 | 이한구 |
| 이해봉 | 이혜훈 | 이호웅 | 이화영 |
| 임인배 |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
|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헌 | 정갑윤 |
| 정두언 | 정문헌 | 정성호 | 정세균 |
| 정의용 | 정의화 | 정장선 | 정종복 |
| 정진석 | 정진섭 | 정청래 | 조성래 |
| 조정식 | 주승용 | 주호영 | 지병문 |
| 진영 | 채수찬 | 천영세 | 최경환 |
| 최구식 | 최규식 | 최병국 | 최성 |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한선교 |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3인)

| | | | |
|-----|-----|-----|-----|
| 강기갑 | 강봉균 | 강재섭 | 고조홍 |
| 고홍길 | 곽성문 | 권경석 | 권영길 |
| 권오을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 김명자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곤 |
| 김애실 | 김영덕 | 김영주 | 김용갑 |
| 김원웅 | 김재윤 | 김정권 | 김정훈 |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김태환 |
| 김학송 | 김형오 | 김형주 | 김효석 |
| 김희정 | 나경원 | 노영민 | 노현송 |
| 노회찬 | 단병호 | 류근찬 | 문병호 |
| 문학진 | 문희 | 문희상 | 민병두 |
| 박기춘 | 박상돈 | 박성범 | 박세환 |
| 박승환 | 박영선 | 박재완 | 박찬석 |
| 박희태 | 배기선 | 백원우 | 변재일 |
| 서갑원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 서혜석 | 선병렬 | 손봉숙 | 신계륜 |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엽 | 심재철 |
| 안경률 | 안민석 | 안홍준 | 양승조 |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오영식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 우제항 | 원희룡 | 유기준 | 유선호 |
| 유승민 | 유시민 | 유인태 | 유정복 |
| 윤건영 | 윤두환 | 윤원호 | 윤호중 |
| 이강두 | 이강래 | 이경숙 | 이경재 |
| 이계경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 이균현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 이명규 | 이미경 | 이방호 | 이병석 |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 이승희 | 이시종 | 이영호 | 이원영 |
| 이윤성 | 이인기 | 이인영 | 이재오 |
| 이재창 | 이정일 | 이종구 | 이한구 |
| 이해봉 | 이혜훈 | 이호웅 | 이화영 |
| 임인배 |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
|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헌 | 정갑윤 |
| 정두언 | 정문헌 | 정성호 | 정세균 |
| 정의용 | 정의화 | 정장선 | 정종복 |
| 정진석 | 정진섭 | 정청래 | 조성래 |
| 조정식 | 주승용 | 주호영 | 지병문 |
| 진영 | 채수찬 | 천영세 | 최경환 |
| 최구식 | 최규식 | 최병국 | 최성 |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한선교 |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김 영 덕 박 희 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7인)

| | | | |
|-------|-------|-------|-------|
| 강 기 갑 | 강 봉 균 | 강 재 섭 | 고 조 홍 |
| 고 홍 길 | 곽 성 문 | 권 경 석 | 권 영 길 |
| 권 오 을 | 김 낙 성 | 김 낙 순 | 김 덕 규 |
| 김 명 자 | 김 무 성 | 김 석 준 | 김 성 곤 |
| 김 애 실 | 김 영 주 | 김 용 갑 | 김 원 응 |
| 김 재 윤 | 김 정 권 | 김 정 훈 | 김 춘 진 |
| 김 태 년 | 김 태 홍 | 김 태 환 | 김 학 송 |
| 김 형 오 | 김 형 주 | 김 효 석 | 김 희 정 |
| 나 경 원 | 노 영 민 | 노 현 송 | 노 회 찬 |
| 단 병 호 | 류 근 찬 | 문 병 호 | 문 학 진 |
| 문 희 | 문 희 상 | 민 병 두 | 박 기 춘 |
| 박 상 돈 | 박 성 범 | 박 세 환 | 박 승 환 |
| 박 영 선 | 박 재 완 | 박 찬 석 | 배 기 선 |
| 백 원 우 | 변 재 일 | 서 갑 원 | 서 병 수 |
| 서 상 기 | 서 재 관 | 손 봉 숙 | 신 계 룬 |
| 신 학 용 | 심 재 엽 | 심 재 철 | 안 경 룬 |
| 안 명 옥 | 안 민 석 | 안 홍 준 | 양 승 조 |
| 양 형 일 | 엄 호 성 | 염 동 연 | 오 영 식 |
| 우 상 호 | 우 원 식 | 우 윤 근 | 우 제 향 |
| 원 희 룬 | 유 기 준 | 유 선 호 | 유 승 민 |
| 유 시 민 | 유 정 복 | 윤 두 환 | 윤 원 호 |
| 윤 호 중 | 이 강 두 | 이 강 래 | 이 경 숙 |
| 이 경 재 | 이 계 경 | 이 계 안 | 이 계 진 |
| 이 광 철 | 이 군 현 | 이 근 식 | 이 기 우 |
| 이 낙 연 | 이 명 규 | 이 미 경 | 이 병 석 |
| 이 상 득 | 이 상 배 | 이 성 구 | 이 성 권 |
| 이 승 회 | 이 시 종 | 이 영 호 | 이 원 영 |
| 이 윤 성 | 이 인 기 | 이 인 영 | 이 재 오 |
| 이 재 창 | 이 정 일 | 이 해 봉 | 이 혜 훈 |
| 이 호 응 | 이 화 영 | 임 인 배 | 장 경 수 |
| 장 복 심 | 장 영 달 | 장 향 숙 | 전 병 현 |
| 정 갑 윤 | 정 덕 구 | 정 두 언 | 정 문 현 |
| 정 성 호 | 정 세 균 | 정 의 용 | 정 의 화 |
| 정 장 선 | 정 종 복 | 정 진 석 | 정 진 섭 |
| 정 청 래 | 조 성 래 | 주 승 용 | 주 호 영 |
| 지 병 문 | 진 수 회 | 진 영 | 채 수 찬 |
| 최 구 식 | 최 규 식 | 최 병 국 | 최 성 |
| 최 재 천 | 최 철 국 | 한 광 원 | 한 선 교 |
| 허 천 | 허 태 열 | 현 애 자 | 홍 창 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 | | | |
|-------|-------|-------|-------|
| 강 기 갑 | 강 봉 균 | 강 재 섭 | 강 창 일 |
| 고 조 홍 | 고 홍 길 | 곽 성 문 | 권 경 석 |
| 권 영 길 | 김 낙 성 | 김 낙 순 | 김 덕 규 |
| 김 명 자 | 김 무 성 | 김 석 준 | 김 성 곤 |
| 김 애 실 | 김 영 덕 | 김 영 주 | 김 용 갑 |
| 김 우 남 | 김 원 응 | 김 재 윤 | 김 정 권 |
| 김 정 훈 | 김 춘 진 | 김 태 홍 | 김 태 환 |
| 김 학 송 | 김 형 오 | 김 형 주 | 김 효 석 |
| 김 희 정 | 나 경 원 | 노 영 민 | 노 현 송 |
| 노 회 찬 | 단 병 호 | 류 근 찬 | 문 병 호 |
| 문 학 진 | 문 희 | 문 희 상 | 민 병 두 |
| 박 기 춘 | 박 상 돈 | 박 성 범 | 박 세 환 |
| 박 승 환 | 박 영 선 | 박 재 완 | 박 찬 석 |
| 박 희 태 | 배 기 선 | 백 원 우 | 변 재 일 |
| 서 갑 원 | 서 병 수 | 서 상 기 | 서 재 관 |
| 손 봉 숙 | 송 영 길 | 신 계 룬 | 신 학 용 |
| 심 상 정 | 심 재 엽 | 심 재 철 | 안 경 룬 |
| 안 명 옥 | 안 민 석 | 안 홍 준 | 양 승 조 |
| 양 형 일 | 엄 호 성 | 염 동 연 | 오 영 식 |
| 오 제 세 | 우 상 호 | 우 원 식 | 우 윤 근 |
| 우 제 향 | 원 희 룬 | 유 기 준 | 유 선 호 |
| 유 시 민 | 유 인 태 | 유 정 복 | 윤 두 환 |
| 윤 원 호 | 윤 호 중 | 이 강 두 | 이 강 래 |
| 이 경 숙 | 이 경 재 | 이 계 경 | 이 계 안 |
| 이 계 진 | 이 광 철 | 이 근 식 | 이 기 우 |
| 이 낙 연 | 이 명 규 | 이 미 경 | 이 병 석 |
| 이 상 득 | 이 상 배 | 이 성 구 | 이 성 권 |
| 이 승 회 | 이 시 종 | 이 영 호 | 이 원 영 |
| 이 윤 성 | 이 인 기 | 이 인 영 | 이 재 오 |
| 이 재 창 | 이 정 일 | 이 해 봉 | 이 호 응 |
| 이 화 영 | 임 인 배 | 임 종 인 | 장 경 수 |
| 장 복 심 | 장 영 달 | 장 향 숙 | 전 병 현 |
| 정 갑 윤 | 정 덕 구 | 정 두 언 | 정 문 현 |
| 정 성 호 | 정 세 균 | 정 의 용 | 정 의 화 |
| 정 장 선 | 정 종 복 | 정 진 석 | 정 진 섭 |
| 정 청 래 | 조 성 래 | 주 승 용 | 주 호 영 |
| 지 병 문 | 진 수 회 | 진 영 | 채 수 찬 |
| 천 영 세 | 최 구 식 | 최 규 식 | 최 병 국 |

최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유 승 민

정 청 래 조 성 래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유 기 준

○發明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 | | | |
|-------|-------|-------|-------|
| 강 기 갑 | 강 봉 균 | 강 재 섭 | 강 창 일 |
| 고 조 흥 | 고 흥 길 | 곽 성 문 | 권 경 석 |
| 권 영 길 | 권 오 을 | 김 낙 성 | 김 낙 순 |
| 김 덕 규 | 김 명 자 | 김 무 성 | 김 석 준 |
| 김 성 곤 | 김 애 실 | 김 영 덕 | 김 영 주 |
| 김 용 갑 | 김 우 남 | 김 원 응 | 김 재 윤 |
| 김 재 흥 | 김 정 권 | 김 정 훈 | 김 춘 진 |
| 김 태 년 | 김 태 흥 | 김 태 환 | 김 학 송 |
| 김 형 오 | 김 형 주 | 김 효 석 | 김 희 정 |
| 노 영 민 | 노 현 송 | 노 회 찬 | 단 병 호 |
| 류 근 찬 | 문 병 호 | 문 학 진 | 문 희 |
| 문 희 상 | 민 병 두 | 박 기 춘 | 박 상 돈 |
| 박 성 범 | 박 승 환 | 박 영 선 | 박 재 완 |
| 박 찬 석 | 박 희 태 | 배 기 선 | 백 원 우 |
| 변 재 일 | 서 갑 원 | 서 병 수 | 서 상 기 |
| 서 재 관 | 손 봉 숙 | 송 영 길 | 신 계 룬 |
| 신 학 용 | 심 상 정 | 심 재 엽 | 심 재 철 |
| 안 경 룬 | 안 명 옥 | 안 흥 준 | 양 승 조 |
| 양 형 일 | 엄 호 성 | 염 동 연 | 오 영 식 |
| 오 제 세 | 우 상 호 | 우 원 식 | 우 윤 근 |
| 우 제 항 | 원 희 룬 | 유 선 호 | 유 승 민 |
| 유 시 민 | 유 인 태 | 유 재 건 | 유 정 복 |
| 윤 두 환 | 윤 원 호 | 윤 호 중 | 이 강 두 |
| 이 강 래 | 이 경 숙 | 이 경 재 | 이 계 경 |
| 이 계 안 | 이 계 진 | 이 균 현 | 이 근 식 |
| 이 기 우 | 이 낙 연 | 이 명 규 | 이 방 호 |
| 이 병 석 | 이 상 득 | 이 상 배 | 이 성 구 |
| 이 성 권 | 이 승 희 | 이 시 종 | 이 영 호 |
| 이 원 영 | 이 윤 성 | 이 인 기 | 이 인 영 |
| 이 재 오 | 이 재 창 | 이 정 일 | 이 종 결 |
| 이 진 구 | 이 해 봉 | 이 혜 훈 | 이 호 응 |
| 이 화 영 | 임 인 배 | 임 종 인 | 장 경 수 |
| 장 복 심 | 장 영 달 | 장 향 숙 | 전 병 현 |
| 정 갑 윤 | 정 덕 구 | 정 두 언 | 정 문 현 |
| 정 성 호 | 정 세 균 | 정 의 용 | 정 의 화 |
| 정 장 선 | 정 중 복 | 정 진 석 | 정 진 섭 |

○辨理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1인)

| | | | |
|-------|-------|-------|-------|
| 강 봉 균 | 강 재 섭 | 강 창 일 | 고 조 흥 |
| 고 흥 길 | 곽 성 문 | 권 경 석 | 권 오 을 |
| 김 낙 성 | 김 낙 순 | 김 명 자 | 김 무 성 |
| 김 석 준 | 김 성 곤 | 김 애 실 | 김 영 덕 |
| 김 영 주 | 김 용 갑 | 김 우 남 | 김 원 응 |
| 김 재 윤 | 김 재 흥 | 김 춘 진 | 김 태 년 |
| 김 태 흥 | 김 태 환 | 김 학 송 | 김 형 오 |
| 김 형 주 | 김 효 석 | 김 희 정 | 노 영 민 |
| 노 현 송 | 류 근 찬 | 문 병 호 | 문 학 진 |
| 문 희 상 | 민 병 두 | 박 기 춘 | 박 상 돈 |
| 박 성 범 | 박 승 환 | 박 영 선 | 박 재 완 |
| 박 찬 석 | 박 희 태 | 배 기 선 | 백 원 우 |
| 변 재 일 | 서 갑 원 | 서 병 수 | 서 상 기 |
| 서 재 관 | 손 봉 숙 | 송 영 길 | 신 계 룬 |
| 신 학 용 | 심 상 정 | 심 재 엽 | 심 재 철 |
| 안 경 룬 | 안 명 옥 | 안 흥 준 | 양 승 조 |
| 안 명 옥 | 안 흥 준 | 양 승 조 | 양 형 일 |
| 안 동 연 | 오 영 식 | 오 제 세 | 우 상 호 |
| 우 원 식 | 우 윤 근 | 우 제 항 | 원 희 룬 |
| 유 선 호 | 유 시 민 | 유 인 태 | 유 재 건 |
| 유 정 복 | 윤 두 환 | 윤 원 호 | 윤 호 중 |
| 이 강 두 | 이 강 래 | 이 경 숙 | 이 경 재 |
| 이 계 경 | 이 계 안 | 이 균 현 | 이 근 식 |
| 이 기 우 | 이 낙 연 | 이 방 호 | 이 병 석 |
| 이 상 득 | 이 상 배 | 이 성 구 | 이 성 권 |
| 이 승 희 | 이 시 종 | 이 영 호 | 이 원 영 |
| 이 윤 성 | 이 인 기 | 이 인 영 | 이 재 오 |
| 이 재 창 | 이 정 일 | 이 종 결 | 이 진 구 |
| 이 해 봉 | 이 혜 훈 | 이 호 응 | 이 화 영 |
| 임 인 배 | 임 종 인 | 장 경 수 | 장 복 심 |
| 장 영 달 | 장 향 숙 | 전 병 현 | 정 갑 윤 |
| 정 덕 구 | 정 문 현 | 정 성 호 | 정 세 균 |
| 정 의 용 | 정 의 화 | 정 장 선 | 정 중 복 |
| 정 진 석 | 정 진 섭 | 정 청 래 | 조 성 래 |
| 주 승 용 | 주 호 영 | 지 병 문 | 진 수 회 |

진 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1인)

강기갑 권영길 김정훈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유기준 유승민
 이명규 천영세 현애자

기권 의원(3인)

김정권 심재철 이계진
 (심상정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
 원 151인 반대 의원 11인임)

이인영 이재오 이정일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조성래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재창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중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중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조 성 래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창 선 황 우 여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조 성 래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창 선 황 우 여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희 룬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기권 의원(1인)

김 성 곤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안명옥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진구
 정청래 조성래 주승용 주호영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이화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홍창선 황우여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박승환
 (이광철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167인, 기권 의원 1인임)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조성래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창선
 황우여

(김희정 의원석 버튼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69인, 기권 의원 없음)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흥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
 여 촉구결의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23인)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흥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영덕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우상호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전병헌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조성래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0인)

박상돈 박찬석 서갑원 우원식
 이경숙 이근식 임종인 장향숙
 정청래 한광원

기권 의원(26인)

강기갑 권영길 김영주 김우남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형주 노희찬 단병호 문학진
 박영선 배기선 심상정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유시민 이기우
 이영호 이인영 장복심 장영달
 천영세 현애자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범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조성래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8인)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신계륜
 심상정 진영 천영세 현애자

기권 의원(3인)

고조흥 이강두 이방호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47인)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출석 의원(24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충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노현송 문병호 문희상 박기춘 박세환 박재완 배기선 서갑원 서혜석 송영선 신중식 심재엽 안민석 안홍준 염동연 우원식 원혜영 유선호 유재건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근식 이목희 이상득 이성구 이영순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혜훈 임종인 장영달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진섭 정희수

김우남 김재윤 김정훈 김태년 김학원 김형주 나경원 노회찬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박순자 박종근 배일도 서병수 선병렬 신계륜 신학용 심재철 안병엽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승민 유정복 윤호중 이경재 이광재 이기우 이미경 이상민 이성권 이영호 이인기 이재창 이진구 이호웅 임해규 장윤석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

김원기 김재홍 김종인 김태홍 김한길 김효석 노영민 단병호 문학진 박계동 박상돈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서상기 손봉숙 신국환 심상정 안경률 안상수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시민 윤건영 이강두 이계경 이광철 이낙연 이방호 이상배 이승희 이용희 이인영 이정일 이한구 이화영 장경수 장향숙 정두연 정세균 정중복 정형근 조경태

김원웅 김정권 김춘진 김태환 김현미 김희선 노웅래 류근찬 문희 박근혜 박성범 박영선 박희태 변재일 서재관 송영길 신상진 심재덕 안명욱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인태 윤두환 이강래 이계안 이군현 이명규 이병석 이상열 이시종 이원영 이인제 이종걸 이혜봉 임인배 장복심 전병헌 정문헌 정의용 정진석 정화원 조성래

조일현 주호영 채수찬 최규식 최연희 최철국 한화갑 홍문표 조정식 지병문 천영세 최병국 최용규 한광원 허천 홍준표 주성영 진수희 최경환 최성 최재성 한명숙 허태열 홍창선 주승용 진영 최구식 최순영 최재천 한선교 현애자 황우여

○청가 의원(40인)

강혜숙 김교홍 김동철 김재원 박병석 안영근 이은영 임태희 조배숙 한병도 권선택 김근태 김부겸 김진표 박찬숙 유승희 이해찬 정동채 조성태 홍미영 권영세 김기현 김성조 김홍일 이상경 임종석 정몽준 천정배 홍재형 권철현 김덕룡 김영숙 남경필 신기남 이석현 임채정 정봉주 최규성 황진하

○출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국방부차관 황규식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원걸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남궁석
입법차장 상원종

【보고사항】

○위원장 사임서 제출

| 위원회 | 위원장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예산결산특별 | 강봉균 | 열린우리당 | 2006. 2. 9 |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이화영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6일간)
(2월 6일)

○간사 선임

| 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통일외교통상 | 이화영 | 열린우리당 | 2006. 2. 1 |
| 국회운영 | 조일현 | 열린우리당 | 2006. 2. 8 |
| | 안경률 | 한나라당 | |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 위원회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여성가족 | 김현미 | 장향숙 | 열린우리당 | 2006. 2. 3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 위원회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윤리특별 | 김선미 | 이원영 | 열린우리당 | 2006. 2. 8 |
| | 문병호 | 최용규 | | |

○의안 제출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 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

(2006. 2. 1 박성범 의원 외 16인 발의)

2월 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6. 2. 1 선병렬 · 강창일 · 양승조 · 민병두 · 엄호성 · 이은영 · 우윤근 · 김태년 · 김현미 · 이영호 · 장영달 · 서재관 · 김정권 · 홍재형 · 최성 · 장복심 · 박상돈 · 이근식 · 강기정 · 박찬숙 · 주승용 · 정성호 · 이해봉 · 이상열 · 최용규 · 장경수 의원 발의)

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6. 2. 1 이호웅 · 문학진 · 박상돈 · 신학용 · 우원식 · 우제항 · 강혜숙 · 장영달 · 정봉주 · 한광원 의원 발의)

2월 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2. 1 최인기 · 이상열 · 김동철 · 안상수 · 최병국 · 신국환 · 류근찬 · 김효석 · 이낙연 · 이정일 · 주승용 · 신중식 · 문학진 의원 발의)

2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나경원 · 이계진 · 임태희 · 김성조 · 이명규 · 김정훈 · 최연희 · 이주호 · 유승민 · 주호영 · 강길부 · 김명주 · 안상수 · 엄호성 · 정두언 · 이계경 · 진영 · 최구식 · 박형준 · 박재완 · 이진구 의원 발의)

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박찬숙 · 이명규 · 임해규 · 이해봉 · 주호영 · 엄호성 · 고조홍 · 김애실 · 이인기 · 고진화 의원 발의)

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박찬숙 · 임해규 · 심재철 · 이해봉 · 주호영 · 엄호성 · 고조홍 · 김애실 · 이인기 · 고진화 의원 발의)

2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최재성 · 안경률 · 엄호성 · 이해봉 · 박기춘 · 임해규 · 정봉주 · 최성 · 배기선 · 임종석 · 이근식 · 백원우 · 신중식 의원 발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이주호 · 고조홍 · 김애실 · 김재경 · 김재원 · 박세환 · 신상진 · 안경률 · 엄호성 · 윤건영 · 이인기 · 이해봉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이주호 · 김애실 · 김재경 · 김재원 · 박세환 · 박찬숙 · 신상진 · 안경률 · 엄호성 · 유기준 · 윤건영 · 이해봉 의원 발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현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현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현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현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헌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헌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강길부 · 박명광 · 이계안 · 나경원 · 김명자 · 이상경 · 전병헌 · 노웅래 · 김영주 · 박상돈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이강래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김동철 · 양형일 · 엄호성 · 김태홍 · 우제창 · 이강래 · 박명광 · 이원영 · 박기춘 · 박상돈 · 김춘진 · 장복심 · 최인기 · 송영길 · 신학용 의원 발의)

이상 9건 2월 3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권영길 · 강기갑 · 강창일 · 고진화 · 권오을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태홍 · 김형주 · 김희선 · 노웅래 · 노회찬 · 단병호 · 민병두 · 박계동 · 박영선 · 박찬석 · 배일도 · 신계륜 · 심상정 · 심재덕 · 이광철 · 이성권 · 이승희 · 이영순 · 이정일 · 임종석 · 임종인 · 정문헌 · 정봉주 · 정성호 · 제종길 · 천영세 · 최성 · 최순영 · 최철국 · 한광원 · 현애자 의원 발의)

2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권영길 · 강기갑 · 강창일 · 고진화 · 권오을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태홍 · 김형주 · 김희선 · 노웅래 · 노회찬 · 단병호 · 민병두 · 박계동 · 박영선 · 박찬석 · 배일도 · 신계륜 · 심상정 · 심재덕 · 이광철 · 이성권 · 이승희 · 이영순 · 이정일 · 임종석 · 임종인 · 정문헌 · 정봉주 · 정성호 · 제종길 · 천영세 · 최성 · 최순영 · 최철국 · 한광원 ·

현애자 의원 발의)

2월 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류근찬 · 신국환 · 이인제 · 최병국 · 김정훈 · 이재웅 · 김희선 · 이상열 · 정진석 · 김낙성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6. 2. 3 김영선 · 주성영 · 박승환 · 유기준 · 이강두 · 이윤성 · 신상진 · 황우여 · 정갑윤 · 김무성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6. 2. 3 이종걸 · 김영주 · 송영길 · 김부겸 · 김선미 · 서갑원 · 정청래 · 우상호 · 우윤근 ·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6. 2. 3 최재성 · 엄호성 · 이해봉 · 박상돈 · 김현미 · 이영호 · 박명광 · 유인태 · 이시중 · 강기정 · 신학용 의원 발의)

2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6. 2. 6 임인배 · 김병호 · 김석준 · 김태환 · 김학송 · 박형준 · 이상배 · 이인기 · 임태희 · 정갑윤 의원 발의)

2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海運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2. 6 한광원 · 김우남 · 신학용 · 김충환 · 서재관 · 노웅래 · 이호웅 · 박상돈 · 이해훈 · 안영근 · 장복심 · 엄호성 · 신중식 · 박기춘 · 강창일 · 강길부 · 박찬석 · 안상수 · 김동철 · 제종길 · 김교홍 · 한병도 · 이시중 의원 발의)

2월 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2. 6 강창일 · 이계진 · 김재윤 · 김우남 · 김태홍 · 임해규 · 고조홍 · 노현송 · 박기춘 · 이광철 · 임종인 의원 발의)

2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2. 6 강창일 · 이계진 · 김재윤 · 김우남 ·

김태홍·임해규·고조흥·노현송·박기춘·
이광철·임종인 의원 발의)

2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
표발의)

(2006. 2. 6 김춘진·장영달·황우여·고조흥·
서재관·강기정·구논회·장향숙·정세균·
조성래·강창일·김동철·최성·엄호성·
이인영 의원 발의)

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
의)

(2006. 2. 6 박세환·유기준·조성태·엄호성·
이인기·이주호·나경원·황진하·권경석·
김정훈 의원 발의)

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세
환 의원 대표발의)

(2006. 2. 6 박세환·윤두환·엄호성·김재원·
홍미영·심재철·윤건영·임해규·이인기·
박재완·황진하·이혜훈·신상진 의원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6. 2. 7 나경원·이주호·주성영·엄호성·
김성조·박진·박세환·유기준·박재완·
정문헌·정화원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 2. 7 최순영·배일도·단병호·천영세·
심상정·노회찬·현애자·이영순·최성권·
영길·강기갑·유승희·임종인 의원 발의)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2. 7 정부 제출)

이상 4건 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
표발의)

(2006. 2. 7 윤건영·고경화·공성진·나경원·
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병수·심재철·
엄호성·이명규·이주호·이해봉 의원 발의)

2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06. 2. 7 정무위원장 제출)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2. 7 국방위원장 제출)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2006. 2. 7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
의)

(2006. 2. 7 김한길·이낙연·천영세 의원 외
159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
의)

(2006. 2. 7 김한길·이낙연·천영세 의원 외
159인 발의)

이상 3건 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
원 대표발의)

(2006. 2. 7 김영선·박찬숙·엄호성·안상수·
주호영·박세환·이혜훈·안경률·심재철·
신국환 의원 발의)

2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船舶安全法 전부개정법률안

(2006. 2. 8 정부 제출)

2월 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제258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 2. 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30일간)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6. 2. 8 장복심·김동철·우윤근·김태년·
이시종·한광원·박상돈·정갑윤·강길부·
선병렬·노현송·신학용·한병도·김정훈·
정세균·김영주·노영민 의원 발의)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6. 2. 8 박세환·황우여·이해봉·엄호성·
안상수·유기준·이혜훈·김정훈·박재완·
박찬숙·윤건영·신상진·김재원 의원 발의)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6. 2. 8 권경석·김명주·안명옥·안택수·
엄호성·이해봉·유기준·이인기·황진하·
김영덕·안경률·최구식·신상진·이윤성·
김애실·고조흥·김성조·박찬숙·김정권·
최병국·김정부·권오을·김재원 의원 발의)

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戒嚴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6. 2. 8 권경석·이명규·이성구·주호영·

엄호성·김명주·이계경·김재원·안상수·
심재철·최병국·이해봉·이인기·김성조·
박찬숙·김정권·최구식·김양수·김정부·
권오을·박재완·황우여·안홍준·고조홍 의원
발의)

2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2. 8 엄호성·김형오·김무성·유기준·
정형근·이재웅·주호영·나경원·김정부·
김양수·김애실·김재원 의원 발의)

基金管理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 표발의)

(2006. 2. 8 엄호성·김형오·김무성·정형근·
주호영·나경원·김정부·김양수·김애실·
윤건영·이한구·김재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 원 대표발의)

(2006. 2. 8 엄호성·김형오·김무성·유기준·
정형근·주호영·나경원·김정부·김양수·
김애실·윤건영·김재원 의원 발의)

2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2. 8 엄호성·김형오·김무성·유기준·
정형근·이재웅·주호영·나경원·김정부·
김양수·윤건영·김재원 의원 발의)

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 2006. 2. 8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 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6. 2. 8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5건)

(2006. 2. 8 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
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으로부터 국정
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자 2월 20

일, 2월 21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
위원의 출석을 요구)

(2006. 2. 8 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
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으로부터 정치
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22일 본회의에
국무총리·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
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2006. 2. 8 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
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으로부터 통
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23일 본회의에 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
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2006. 2. 8 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
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으로부터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24일, 2월 27일
본회의에 국무총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
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
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
을 요구)

(2006. 2. 8 김한길·이재오·이낙연·천영세·
정진석·김학원 의원 외 290인으로부터 교육·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28일
본회의에 국무총리·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
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
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6. 2. 9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06. 2. 9 의장 제의)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9일간)

○의안 심사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요청안

(2006. 1. 5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2월 9일 대통령에게 송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종석) 인사청문요 청안

(2006. 1. 5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2월 9일 대통령에게 송부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인사청문요청안

(2006. 1. 5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2월 9일 대통령에게 송부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요청안

(2006. 1. 5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2월 9일 대통령에게 송부

경찰청장후보자(이택순) 인사청문요청안

(2006. 1. 5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2월 9일 대통령에게 송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8 정부 제출)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6. 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4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문학진·강혜숙·김부겸·김영춘·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현송·박찬석·송영길·안상수·엄호성·이근식·이원영·이호웅·장영달·정봉주·정성호·정청래·채수찬·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2005. 3. 31 김명자·강혜숙·구노희·권영길·김재경·김춘진·김태홍·김현미·노영민·노현송·노회찬·민병두·박영선·박재완·박찬석·박찬숙·배일도·백원우·서혜석·신국환·신중식·심상정·안상수·안영근·

엄호성·오영식·오제세·우원식·우윤근·유승희·유시민·유정복·윤원호·윤호중·이계경·이상득·이영순·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해봉·이호웅·장복심·장영달·정문헌·정의용·조승수·천영세·최성·최순영·최인기·한병도·현애자·홍미영·홍창선·황진하·손봉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統合防衛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28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5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温泉法 전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박기춘·김태홍·강창일·문학진·안병엽·정장선·박명광·노웅래·심재덕·김교홍·양형일·우제항·김낙순·노현송·홍미영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05. 11. 22 정부 제출)

풍수해보험법안

(2005. 10.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3 허천·정문헌·박세환·김정훈·이계진·심재엽·정장선·박형준·임태희·안상수·김병호·조일현·정성호·최연희·이광재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6. 17 서병수·김재원·박재완·전여옥·권경석·정의화·정화원·정형근·허태열·정갑윤·김교홍·정종복 의원 발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이명규·김재원·박재완·심재철·권경석·김영선·곽성문·안상수·김성조·정갑윤·이상득·이운성·임인배·윤건영·배일도·이해봉·이상배·고조홍·엄호성 의원 발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
표발의)(2005. 12. 23 정형근 · 김정권 · 김재원 ·
이인기 · 이해봉 · 엄호성 · 박재완 · 유승민 ·
박세환 · 김기현 · 고조홍 · 안병엽 · 신상진 ·
안상수 · 박찬숙 · 정화원 · 문희 · 임대회 의원
발의)

1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
발의)(2005. 8. 3 이계경 · 엄호성 · 심재철 · 박찬숙 ·
황우여 · 박재완 · 박세환 · 안상수 · 이성권 ·
심재덕 · 김석준 의원 발의)

1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
발의)(2005. 12. 26 이호웅 · 문학진 · 박상돈 ·
신학용 · 우원식 · 우제항 · 강혜숙 · 장영달 ·
정봉주 · 한광원 의원 발의)

2월 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윤상림사건에 관한 질문서**

(2006. 2. 8 주호영 의원 제출)

검찰의 삼성채권 수사(보충)에 관한 질문서

(2006. 2. 8 권영세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2005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서**

(2006. 2. 2 정부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